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59

발의연월일: 2025. 4. 3.

발 의 자: 박성훈·김형동·고동진

안상훈 • 이인선 • 박충권

백종헌 • 김성원 • 조배숙

이상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음.

그런데 정부는 2023년 2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「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」을 발표하면서,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주요 과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이양하기로 하였는데 동 주요 과제에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음.

이에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10만 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과미리 협의한 후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(이하 "지방교통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·고시할 수 있다.
-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·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제8항 중 "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(이하 "지방교통위원회"라 한다)의"를 "지방교통위원회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 	개 정 안
제3조(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	제3조(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
·고시) ① · ② (생 략)	·고시) ① · ② (현행과 같
	<u>수</u>)
<u><신 설></u>	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도
	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외의
	지역으로서 도시교통의 원활한
	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
	경친화적 보전 • 관리를 위하여
	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
	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
	후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
	법」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
	위원회(이하 "지방교통위원회"
	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도시
	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・고시
	<u>할 수 있다.</u>
<u> <신 설></u>	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도
	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・고
	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
	에게 그 지정을 통보하여야 한
	<u>다.</u>
제5조(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	제5조(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
수립) ① ~ ⑦ (생 략)	수립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입안하려면 기본계획안을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"라 한회(이하 "지방교통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과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반영하여야 한다.

8
<u>z</u>]
방교통위원회의